

□ 제 2 주 제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제도

(확인검사 수행중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출해 본 개선방안)

박 오 현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지도원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가. 의의

○ 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설계·시공자가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실현하여 발생가능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억제

○ 공사중의 안전시설 개선등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 (노동부 고시 제92-48호)

다. 계획서 심사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 이상인 잠함공사

-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30톤 이상의 고정식 크레인 사용공사

라. 계획서 심사현황

1) 계획서 접수 및 심사실적

92. 12. 31현재

구분	접수	심사	진행	비 고
계	1,894건	1,782건	112건	
1991년	442	442	-	'91.2.18.고시제정
1992년	1,452	1,340	112	

(주) '91년 이월분(167건)은 '92년 접수에 포함.

2) 지역별·공사종류별 접수현황

'92. 12. 31 현재

구분	계	경인	충청	영남	호남	비고
계	1,894건	1,030건	203건	484건	177건	
%	100	54.4	10.7	25.6	9.3	
아파트	1,237건	604건	140건	363건	130건	
%	65.3	31.9	7.4	19.2	6.9	
빌딩	348건	250건	48건	37건	13건	
%	18.4	13.2	2.5	2.0	0.7	
기타	309건	176건	15건	84건	34건	
%	16.3	9.3	0.8	4.4	1.7	

3) 심사항목별 접수현황

'92년 접수분

심 사항 목	%	접수	비고
계	100%	1,285건	
1. 지상높이 31미터이상 구조물 공사	71	909	
2. 최대지간 50미터이상 교량공사	3	34	
3. 터널공사	6	82	
4. 제방높이 20미터이상 댐공사	-	1	
5. 게이지압력 1.3kg/cm이상 잠함공사	-	-	
6. 깊이 10.5미터이상 굴착공사	20	259	
7. 최대인양 하중 30톤이상 고정식 크레인 사용공사	-	-	

마. 확인검사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 법 제4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보완조치사항의 준수여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지도

2. 문제점 개선 방안

항목	문 제 점(현실태)	개 선 방 안
○ 계획서 작성	○ 계획서 내용 및 작성방법 미흡 - 일반시방서 Copy 첨부 - 불필요 도면 제출경향 - 공중 진행에 따른 부위별 예방대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인적재해 예방)인식부족	○ 심사기준(표준모델) 개발배포 - 공사별, 공중별 필요내용을 총체적, 구체적으로 수록 - 지속적 홍보 - 작성자 교육(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항목	문 제 점(현실태)	개 선 방 안
	○ 심사기간 지연(서류보완 등) ○ 제출시기 지연, 미제출	○ 기준개발, 기준제정 - 신공법 등
	○ 시공과정에서 계획 변경 - 진행중 여건변화 - 작성시 미확정(장기공사)	○ 확인검사와 연계 - 확인시 추가지도 ※ 1년단위의 계획 및 심사

3. 효과

-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정착기반 조성
- 지도원 심사이관시 심사의 일관성 유지
- 심사기준(표준모델)에 포함할 사항
- 분류(공중별)
 - 건축공사-APT, BLD, Plant등
 - 토목공사-교량, 터널, 지하철 등
- 내용
 - 현장조직-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유도 또는 신호자 등
 - 교육-정기, 수시교육계획, 자격·면허취득교육, 교육기자재 및 초빙강사 계획 등
 - 안전시설-공중별, 공정진행에 따른 부위별 예방대책(상세도 첨부)
 - 안전관리비-집행실적(정산)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첨부
 1. 수량산출서
 2. 내역서
 3. 자금사용계획서(월별, 분기별)
- * 별도계상비용 작성(예)

항 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표준안전난간	100	M	10,000원	1,000,000
낙하물방지망	200	M	5,000	1,000,000

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공사금액 4,000만원(관급자재포함)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고시 제8조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시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기본비용난 가항에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제12조 1항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를 별표 3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에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50인 미만일 때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도록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기술한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산안법시행령에는 10억이상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비 4,000만원~공사비 10억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계상하면서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항에 위배되며 고시 제8조(사용기준)에도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사용상의 문제점(실집행문제)

표준안전관리비는 고시 제8조(사용기준) 1항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대형공사 및 주요공종의 공사는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실시 투입현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음(’92년 5월 25일~’92년 6월 3일) (1992년 7월 13일~1992년 8월 6일) 2차에 걸쳐 건설부 및 감사원과 대형관급공사를 합동 점검에 의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형 건설현장에는 조사할 기회가 없어서 본 협회 안전관리자 교육생들 중 설문 대상자 148명 소속회사 94개사에 설문을 조사한 결과 <표 3-2 참조>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기본비용)는 규정대로 현장에 전액 투입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응답자 148명 중 83%인 123명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실

<표 3-1> 문제점

산 안 법	안전관리자 선임	10억원 이상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4,000만원 이상
	안전관리자 미선임	4,000만원~10억원 미만

<표 3-2>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항 목	응답자	율(%)	부 기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기본비용)는 규정대로 현장에 전액 투입되고 있다고 보는가	투입되고 있다	21명 19.44	설문참가자 148명, 무응답 4명
	투입되지 않는다	123명 83	
만약 규정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사유	본사에서 현장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108명 72.97	무응답 9명
	현장에서 투입하지 않는다	30명 20.02	
안전관리비(기본비용)를 규정대로 현장에 투입한다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144명 97.29	
	별효과가 없다	4명 2.71	

정이며 투입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투입(현장으로) 되지 않는다가 72.97%인 108명이 답하였으며 또한 본사에서 현장으로 투입되더라도 현장 자체에서 투입하지 않는다가 20%인 30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비 자체의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관리의 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대책(안)

우리나라가 국내서 1년간 발주되는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분류하여 보면 <표 4-1 참조> '92년도 발행된 건설업 통계연보에 의하면 '90년도에 국내 발주건설공사는 총 37,678건의 계약건수에 총공사 계약금액이 26조 376억으로서 이중 10억원 이하가 계약건수 33,493건에 총계약금액이 5조 5,858억원이며 10억원 이상이 계약건수 4,185건에 20조 7,907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국내 발주공사 총 37,678건 중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현장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89%는 안전관리자를 합법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국내 건설현장의 대부분이 영세건설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며 근로자가 항상 건설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배제

<표 4-1> '90년 국내 발주공사

공사금액	계약건수	%	계약금액	부 기
10억 이하	33,493건	89	5조 5858억 원	※ 민간발주공사 포함
10억 이상	4,185건	11	20조 7907억 원	〃
계	37,678건	100	26조 3765억 원	〃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요망되며 안전관리비의 계상내역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업의 재정적부담이 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으므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건설업에도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주장하고 싶다.

5. 결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주종을 이루는 건설재해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업의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건설사업장에 안전관리계획, 교육, 점검의 방법 및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지도 등 안전관리의 기술적, 관리적 지원을 하므로써 건설재해를 줄이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믿으며 특히 <표 3-2>에 나타났듯이 안전관리비를 규정대로 현장에 투입을 하여도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97%나 된다는 것이나 서언에서 나타났듯이 선진국의 재해통계에서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년도부터는 현저히 재해율이 저하되는 것을 보아도 건설재해는 안전관리비를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재해가 감소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항들을 지도하므로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소형 건설현장에 재해는 어느정도 예방된다고 보아 당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